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강현삼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조례의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 사항을 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시설은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소방시설의 고장난 상태 방치와 복도, 계단 등 출입구 폐쇄·훼손 행위 등에 대한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함(안 제3조)

다. 신고 방법, 신고 처리와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 내용을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마. 포상금 등의 지급 절차와 금액 등을 정하고,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 결과의 통지 방법을 명확히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바.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여부와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누설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포상금 등을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한 경우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특성소방대상물은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설로서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함으로,
- 관계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방 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